

偏父家庭의 實態와 支援方案

李 尙 憲

최근에 오면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偏父家庭이 향후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편부가정의 아동양육과 가사노동의 부담을 받아들여 재혼을 하려는 여성들이 줄어들어 따라 偏父家庭의 家事 및 兒童養育의 문제가 심각한 社會問題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편부가정들이 갖고 있는 生活上의 問題點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支援方案을 모색하였다.

편부가정의 문제점은 첫째, 편부가정 父의 학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능력면에서 식품비가 부담이 될 정도로 열악하고, 일부 편부가정은 最低生計費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수준을 나타냈다. 둘째, 편부가정은 핵가족 형태가 72.6%로 직장생활과 가사 및 자녀양육을 병행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再婚할 의사가 있으나 실제로 재혼을 하기에는 본인들의 경제능력과 생활능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 재혼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偏父家庭의 問題點을 해결하기 위한 對策으로는 첫째, 현행 정부지원시책을 보다 현실화하여 편부가정에 대한 지원금을 최저생계비를 충족할 수 있도록 증액·지원하고, 아동양육수당, 미국의 근로촉진프로그램 등을 도입토록 한다. 둘째, 미국의 가정부서비스를 도입하여 가사 및 자녀정서지원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편부가정에 대한 教育費支援을 인문계까지 확대하고, 대학생에 대한 장기저리융자를 시행해야 한다. 넷째, 편부가정의 父가 안심하고 職場생활을 영위하도록 아동들을 어린이집이나 방과후 프로그램에 우선 입소시키고, 父의 장기출장시에는 24시간제 운영 어린이집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동이 원하면 언제든지 生母를 만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고, 재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家庭相談所에 대상인력에 대한 정보를 電算化해야 한다.

◎ 주요용어: 편부가정, 아동양육, 최저생계비, 지원방안

筆者: 本院 主任研究員

▶ 원고를 검독하여 주신 卞俗榮 研究委員과 李必道 責任研究員께 감사드립니다.

I. 序論

1. 研究背景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과 역할이 변화됨에 따라 가족구성원들간의 유대가 약화되어 家族解體를 부추기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현대가족에서는 친족은 물론 가족구성원들간의 유대가 약화됨에 따라 부부간의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 과거와는 달리 離婚, 別居 및 遺棄하는 경우들이 늘어나면서 편부가정(單親家庭)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離婚率이 최근에 오면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이혼건수를 보면, 1980년에 22,980건이었으나, 1990년에는 45,467건이었고, 1994년에는 65,83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1996:112). 이러한 증가추이는 産業化와 都市化가 진전되면 될수록 선진국의 경우(A. H. Gauthier, 1996:147) 처럼 더 더욱 증가할 것으로 豫測된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偏父家庭의 實態에 관한 정확한 자료가 없는 실정이나, 이처럼 증가하는 이혼율과 이혼 후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사회적 환경을 고려할 때, 편부가정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 단적인 예로 보건복지부의 父子家庭 實態調査 集計表에 의하면, 1994년도에는 부자가정세대가 12,814세대였고, 세대원수가 38,853명이었으나, 1996년도에는 부자가정세대가 14,621세대로 증가하였고, 세대원수도 41,555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는 편부가정은 配偶者의 不在로 인한 생활상의 변화와 더불어 경제기반의 불안정화, 생활비의 팽창과 가계관리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經濟的인 問題에 봉착하게 되며(平野隆之外, 1987:8~11), 아울러 가사와 아동양육을 담당할 母의 不在로 인하여 偏

父家庭의 父는 경제적 수입을 위한 職場生活과 家事와 兒童養育을 병행해야 함으로써 직장생활 및 가사나 아동양육의 문제로 인한 이중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편부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 주지 못함으로써, 家族解體를 불러와 소년/소녀가장가구나 아동복지수용시설에 아동들을 수용하게 되는 副次的인 問題를 동시에 야기시키고 있다(이상헌, 1997:4).

또한 편모가정과 같이 편부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동들은 그들의 社會化過程에서 자신들이 모델로 삼아야 하는 父 또는 母의 不在로 인하여 정상적인 社會化過程을 경험하기가 어렵다. 이로 인하여 편부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의 人性(personality)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아 자신들이 가정을 꾸려나갈 때 적응을 잘하지 못하여 새로운 편부모가정을 만들 여지가 생기는 問題의 惡循環이 있을 수 있다(이상헌, 1997:5).

향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편부모가정중 편부가정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최근 1995년에 와서야 관심을 가지고 보건복지부 가정복지과에서 맡아 政府支援을 시행하다가 1998년부터 여성복지과에서 맡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모법이 없는 상태하에서 근거법을 社會保障基本法에 두고 부녀복지사업지침에 의거하여 정부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편부가정의 아동양육과 가사노동의 부담을 받아들여 재혼을 하려는 여성들이 줄어들어 따라 偏父家庭의 家事 및 兒童養育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들 편부가정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편부가정의 심각한 문제가 현대사회에서의 사회문제인 점을 고려하여 편부가정들이 갖고 있는 生活上의 問題點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支援方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研究方法

본 연구를 위한 研究方法으로는 크게 3가지 방법을 기초로 하여 수행

하였다. 첫째, 文獻考察로서 기존의 국내외 연구논문들을 분석하였고, 둘째, 편부가정의 복지현안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94년도에 수행한 “缺損家族의 生活實態調査”자료중 편부가정에 해당하는 자료만을 추출하여 사회과학통계패키지(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를 이용하여 단순교차집계표(Crosstabs)나 χ^2 검증테스트 등을 통한 資料分析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문헌에서 편부가정을 상담한 事例를 통해 자료분석을 보완하여 설명을 하였다.

II. 偏父家庭의 一般事項과 發生原因

1. 偏父家庭의 一般事項

편부가정 아버지의 일반특성을 살펴보면, 偏父家庭 아버지의 平均年齡은 45.4세이며, 教育程度를 보면, 무학이 8.6%, 국민학교 졸업이 29.6%, 중학교 졸업이 29.0%, 고등학교 졸업이 28.0%, 전문대학 이상이 4.8%로 나타났다. 이는 1995년도 25세 이상인 우리나라 男子의 學歷水準이 국민학교 졸업 이하가 18.6%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가 66.9%인데 비해 偏父家庭의 아버지는 각각 38.2%와 32.8%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편부가정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통계청, 1996:202).

편부가정 父의 職業은 단순노무직이 36.0%로 가장 많았고, 전문·사무직과 농·어업이 똑같이 12.9%였으며, 판매·서비스직이 10.8%, 무직이 19.9%였다. 편부가정 父의 平均 家族員數는 3.45명으로 1995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 3.3명보다 약간 많았다(통계청, 1996:109). 偏父家庭의 世帶別 家族形態는 72.6%가 핵가족 형태인 2세대 가구였고, 3세대 이상은 27.4%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편부가정의 약 3/4 정

도가 職業과 家事 및 子女養育上의 葛藤關係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편부가정의 父가 직장을 나가는 경우 이러한 2세대 편부가정에서는 가사와 자녀양육을 돌보아 줄 어머니의 不在를 대신할 존재가 없다는 문제로 인하여 父의 職場生活과 동시에 家事와 子女養育을 해야 한다는 兩立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편부가정은 47.8%가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전세인 경우가 23.7%, 월세인 경우가 25.3%, 그리고 기타가 3.2%였다. 1995년도 우리나라 國民의 住宅所有形態는 자가가 53.3%, 전세가 28.1%, 월세가 15.5%, 그리고 기타가 3.0%인 것(통계청, 1996:283)을 고려할 때, 偏父家庭은 자가와 전세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고, 월세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이상현, 1997:24~37).

편부가정 父의 平均結婚年齡은 27.08세였고, 配偶者의 平均結婚年齡은 23.04세로 두 부부간의 연령차는 약 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5년도 우리나라 평균 초혼연령인 남자 29.3세와 여자 26.1세(통계청, 1996:112) 보다 각각 2세와 3세 정도 더 빨리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편부가정 父의 平均解婚年齡은 39.54세인데 비해 배우자의 평균 해혼연령은 35.53세로 나타났으며, 偏父家庭의 平均結婚期間은 11.01년으로 나타났다(이상현, 1997:41~47).

2. 偏父家庭의 發生原因

편부가정 父의 解婚事由를 살펴보면, 편부가정들은 離婚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35.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1.2%인 배우자와의 死別, 23.1%인 家出이나 遺棄, 9.7%인 別居 등의 순이었다. 배우자의 사별로 인하여 편부가정을 이룬 경우 그 死別原因을 보면, 81.0%가 병사였고, 교통사고 등의 사고와 死別原因이 불명인 경우가 똑같이 6.9%였으며, 자살한 경우는 3.4%였다. 그리고 편부가정을 형성하게 되는 원인으로 사별과 더불어 중요한 요인인 이혼, 별거 및 가출의 원인을 살펴보면,

夫婦間의 性格差異로 인한 경우가 전체중 36.6%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원인으로서는 가족간의 불화(19.5%), 배우자의 부정이나 경제적 문제(11.4%), 家族扶養義務 不履行(6.5%), 虐待나 暴力(4.9%) 등이었다.

Ⅲ. 偏父家庭의 問題點

1. 經濟的 問題

가. 月平均 生活費와 收入

편부가정의 월평균 생활비와 수입을 편부가정 父의 一般特性別로 나누어 살펴보면 <表 1>과 같다. 편부가정의 월평균 생활비는 58만 8천원이고, 편부가정의 평균 가족원수가 3.45명인데, 이는 1994년도 家口規模別 最低生計費 중 3인 가구가 54만 6천원과 4인 가구가 66만 7천원(박순일, 1994:206)의 중간인 60만 7천원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偏父家庭의 生活水準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편부가정 父의 일반특성별 월평균 생활비를 살펴보면, 父의 年齡이 40세에서 49세까지의 연령집단이 월평균 생활비가 62만 6천원으로 타연령집단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父의 教育程度와 월평균 생활비간에는 正의 相關關係를 나타내 교육수준이 올라갈수록 월평균 생활비도 많아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즉, 月平均 生活費는 국민학교 이하인 집단이 46만 6천원인데 비해 중학교 집단은 61만 2천원, 고등학교 이상인 집단은 70만 8천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국민학교 이하인 집단은 最低生計費에도 훨씬 못미치는 생활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집단에 대한 대책마련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表 1> 偏父家庭 父의 一般特性別 月平均 生活費와 收入

(단위: 만원)

구 분	월평균 생활비	월평균 수입
전 체	58.8	70.9
부의 연령		
39세 이하	56.1	71.7
40~49세	62.6	74.5
50세 이상	54.8	63.4
부의 교육정도		
국민학교 이하	46.6	54.9
중학교	61.2	78.1
고등학교 이상	70.8	82.9

偏父家庭 家口主의 월평균수입은 70만 9천원이었는데, 이러한 편부가정의 월평균수입은 1995년도 우리나라 農家의 月平均所得인 1,816,880원에 약 39%인 것과 都市勤勞者 家口의 월평균 소득인 1,911,064원에 약 37%인 점(통계청, 1996:133~134)을 감안할 때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편부가정 父의 연령별로 나누어보면, 40세에서 49세까지의 연령집단이 家口主의 月平均收入이 74만 5천원으로 71만 7천원인 39세 이하의 연령집단과 63만 4천원인 50세 이상의 연령집단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父의 教育程度別로 가구주의 월평균수입을 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주의 월평균수입이 많아지는 正의 相關關係였다. 즉, 父의 教育정도가 국민학교 이하인 집단은 가구주의 월평균수입이 54만 9천원이었고, 중학교 집단은 78만 1천원이었으며, 고등학교 이상인 집단은 82만 9천원이었다.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 父의 연령이 많은 집단과 학력수준이 낮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들 집단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나. 負擔되는 生活費目

편부가정이 생활비중 부담이 되는 생활비목이 무엇인지를 알아본 바 <表 2>와 같다. 偏父家庭에서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生活費目은 24.7%인

〈表 2〉 偏父家庭 父의 一般特性別 負擔되는 生活費目

(단위: %)

	식품비	주거비	교육비 ¹⁾	의료비	공과금	기타 ²⁾	계 (수)	χ^2
전 체	24.7	22.6	24.2	8.1	3.8	16.6	100.0 (186)	
부의 연령								28.09
39세 이하	36.2	23.4	10.6	14.9	4.3	10.6	100.0 (47)	
40~49세	24.1	20.7	32.1	3.4	2.3	17.4	100.0 (87)	
50세 이상	15.4	25.0	23.1	9.6	5.8	21.1	100.0 (52)	
부의 교육정도								19.06
국민학교 이하	28.2	26.8	19.7	5.6	5.6	14.1	100.0 (71)	
중학교	25.9	16.7	31.5	7.4	-	18.5	100.0 (54)	
고등학교 이상	19.7	23.0	23.0	11.5	4.9	17.9	100.0 (61)	

註: 1) 교육비에는 학비와 과외비가 모두 포함된 것임.

2) 기타에는 피복비, 경조사부조비 등이 포함된 것임.

食品費였으며, 그 다음이 24.2%인 학비와 과외비를 포함한 교육비, 22.6%인 주거비, 16.6%인 被服費와 경조사부조비를 포함한 기타, 8.1%인 의료비, 3.8%인 공과금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생활비목중 식품비가 가장 부담스럽다는 것은 基本的 生計가 어려울 정도로 偏父家庭의 生活가 劣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편부가정 父의 年齡別로 나누어 생활비 중 부담되는 생활비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39세 이하의 집단은 36.2%인 食品費가, 40세에서 49세까지의 집단은 32.1%인 學費나 課外費를 포함한 교육비가, 50세 이상은 25.0%인 住居費가 각각 가장 부담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은 각 연령층의 가족구성에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즉, 39세 이하의 집단은 저연령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서 다른 生活費目 보다도 식품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40세에서 49세까지의 집단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양육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타연령집단보다 많을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학비나 과외비를 포함한 教育費가 가장 부담스러울 것이며, 50세 이상의 집단은 자녀들이 성인으로 성장한 자녀들을 양육하고, 타연령집단보다는 자녀들을 많이 낳아 길렀기 때문에 住居空間이 타연령집

단보다 넓어야 하므로 우리나라와 같이 주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 하에서는 당연히 住居費가 가장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父의 敎育程度別로 보면, 국민학교 이하의 집단은 28.2%인 식품비가 가장 부담스럽다고 하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봉급의 직종에 종사함에 따라 經濟的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基本的인 生計의 問題인 食品費가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리라고 판단된다. 중학교 집단은 학비와 과외비를 포함한 敎育費가 31.5%로 가장 부담스럽다고 하였으며, 고등학교 이상의 집단은 住居費와 學費와 과외비를 포함한 敎育費가 똑같이 23.0%로 가장 부담스럽다고 하였다.

(經濟的 어려움에 대한 事例)

“월급이 150만원 정도인 나는 이혼 전에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못했으나, 이혼 후 씹씹이는 계획적으로 살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느낀다. 혼자 있다 보니까, 친구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으며, 저녁에 놀다가자고 하고 그리고 식당에서 식사를 먹는 기회가 많아졌다. 아이들의 고등학교 학비 50만원, 전에는 규모있는 살림이었는데 지금은 계획적인 살림을 할 수 없다. 이혼시 재산분할로 재산의 1/3을 돈으로 주었다. 이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했다. 전부가 돈인 것으로 생각된다. 아이들이 취직을 하면 나아질 것이다. 아들이 공고에 다니고 있지만 전문대학에 진학할 예정이다. 저축은 도저히 못하고, 상상외의 지출이 크다”(변화순, 1996:79).

2. 子女養育 問題

가. 子女養育 主擔當者

편부가정 父의 解婚前後 자녀양육 주담당자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아본 바는 <表 3>과 같다. 子女養育 主擔當者가 해혼전에는 부부공동이었다가 해혼후에는 편부가정 父인 본인인 경우가 53.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해혼전후에 변함없이 본인인 경우가 18.1%, 해혼전에는 夫婦共同이었다가 해혼후에는 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인 경우가 16.9%, 해혼전후에 변함없이 父母인 경우가 6.2%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측면에

〈表 3〉 偏父家庭 父의 一般特性 및 解婚事由別 解婚前後 子女養育 主擔當者의 變化

(단위: %)

	해혼전 본인	해혼전 부부공동 해혼후 본인	해혼전 부부공동 해혼후 기타 ²⁾	해혼 전후 부모	기타 ³⁾	계 (수)	χ^2
전 체 ¹⁾	18.1	53.1	16.9	6.2	5.7	100.0 (177)	
부의 연령**							30.71
39세 이하	22.7	40.9	20.5	13.6	2.3	100.0 (44)	
40~49세	20.9	45.3	22.1	4.7	7.0	100.0 (86)	
50세 이상	8.5	78.7	4.3	2.1	6.4	100.0 (47)	
부의 교육정도							3.77
국민학교 이하	17.9	53.7	14.9	9.0	4.5	100.0 (67)	
중학교	19.2	55.8	15.4	3.8	5.8	100.0 (52)	
고등학교 이상	17.2	50.0	20.7	5.2	6.9	100.0 (58)	
부의 해혼사유*							16.28
사별	9.3	70.4	13.0	1.9	5.4	100.0 (54)	
이혼	24.2	50.0	14.5	4.8	6.5	100.0 (62)	
별거/가출/기타	19.7	41.0	23.0	11.5	4.8	100.0 (61)	

註: 1) 무응답한 9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2) 기타에는 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이 포함되었음.

3) 기타에는 해혼전 본인 해혼후 기타(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 해혼전 부모나 친척 해혼후 기타(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 등이 포함되었음.

* p<0.1 ** p<0.001

서 볼 때, 偏父家庭의 자녀양육 주담당자는 해혼전에는 夫婦共同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가 해혼후 편부가정 父의 配偶者의 不在로 인하여 本人과 父母, 兄弟·姉妹, 親戚 등으로 자녀양육의 주담당자가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父의 年齡集團別로 나누어 살펴보면, 자녀양육 주담당자가 해혼전에는 夫婦共同이었다가 해혼후 본인이 담당하는 경우는 78.7%인 50세 이상의 집단이 상대적으로 타연령집단보다 많았고, 解婚前後에 변함없이 本人이나 父母인 경우는 각각 22.7%와 13.6%인 39세 이하의 집단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50세 이상의 집단에서 보다 많은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父의 敎育程度別로 보면, 자녀양육 주담당자가 해혼전후에 변함없이 본인인 경우와 해혼전에는 부부공동이었다가 解婚後에 본인이 담당하는 경우는 각각 19.2%와 55.8%인 중학교 집단이 상대적으로 타연령집단보다 많았고, 解婚前後에 변함없이 父母가 자녀양육의 주담당자인 경우는 9.0%인 국민학교 이하의 집단이, 그리고 해혼전에는 夫婦共同이었다가 해혼후에는 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이 자녀양육을 담당하는 경우는 20.7%인 고등학교 이상의 집단이 각각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父의 解婚事由別로 보면, 자녀양육 주담당자가 해혼전 부부공동이었다가 해혼후 본인이 담당하는 경우는 死別集團이 70.4%, 해혼전후 변함없이 본인인 경우는 離婚集團이 24.2%, 해혼전후 변함없이 부모인 경우는 別居, 家出, 기타 등의 사유로 해혼한 집단이 11.5% 등으로 각각 상대적으로 타집단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死別集團이 타집단보다 상대적으로 큰 變化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子女養育上の 어려움

偏父家庭에 있어서의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解婚前後에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를 알아본 바는 <表 4>와 같다. 偏父家庭에 있어서 子女養育上の 어려움은 해혼전후에 변함없이 養育問題라고 한 경우가 33.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해혼전에는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들이 해혼후 자녀양육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16.1%, 解婚前에는 養育問題가 어려웠던 사람이 解婚後에는 敎育, 健康, 성격 등의 문제가 자녀양육의 어려움인 것으로 변화한 경우가 14.9%, 해혼전후에 변함없이 敎育問題인 경우가 13.2% 등의 순이었다. 이를 父의 연령집단별로 나누어 보면, 39세 이하의 집단은 해혼전후 변함없이 양육문제가 子女養育上の 어려움이라는 경우가 52.3%로 타연령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이 집단의 경우 초등학교 이전의 영·유아를 양육함과 동시에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表 4〉 偏父家庭 父의 一般特性 및 解婚事由別 解婚前後 子女養育上 어려움 變化

(단위: %)

	해혼 전후 어려움 없음	해혼전 어려움 없음 해혼후 어려움 있음	해혼 전후 양육 문제	해혼전 양육 해혼후 기타 ²⁾	해혼 전후 교육 문제	기타 ³⁾	계 (수)	χ^2
전 체 ¹⁾	5.7	16.1	33.9	14.9	13.2	16.2	100.0 (175)	
부의 연령								19.44
39세 이하	6.8	18.2	52.3	11.4	4.5	6.8	100.0 (44)	
40~49세	4.8	17.9	29.8	11.9	15.5	20.1	100.0 (85)	
50세 이상	6.5	10.9	23.9	23.9	17.4	17.4	100.0 (46)	
부의 교육정도								8.25
국민학교 이하	3.1	16.9	40.0	15.4	10.8	13.8	100.0 (65)	
중학교	7.8	9.8	31.4	15.7	15.7	19.6	100.0 (52)	
고등학교 이상	6.9	20.7	29.3	13.8	13.8	15.5	100.0 (58)	
부의 해혼사유*								8.27
사별	11.3	11.3	30.2	18.9	13.2	15.1	100.0 (53)	
이혼	1.6	24.2	30.6	12.9	16.1	14.6	100.0 (62)	
별거/가출/기타	5.1	11.9	40.7	13.6	10.2	18.5	100.0 (60)	

註: 1) 자녀가없는 경우와 무응답한 11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2) 기타에는 교육, 건강, 성격문제 등이 포함되었음.

3) 기타에는 해혼전후 건강문제와 해혼전 건강문제 해혼후 기타(양육, 교육, 성격 등)문제 등이 포함되었음.

* $p < 0.1$

데 있어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러한 39세 이하의 집단은 解婚前에는 어려움이 없다가 解婚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율도 18.2%로 타연령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이 연령집단이 해혼전후를 통하여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해혼전후 변함없이 敎育問題라는 경우와 해혼전 養育問題였다가 해혼후 교육, 건강, 성격 등의 문제라는 경우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그 비율도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 나이가 들수록 아이들의 연령도 영·유아에서 청소년이나 성인으로 성장함에 따라 子女養育上의 問題도 양육문제에서

教育, 健康, 性格 등의 문제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父의 教育정도별로 보면, 離婚전후 變함없이 子녀양육상의 어려움이 양육문제인 경우는 學歷水準이 낮을수록 많아 국민학교 이하의 집단은 40.0%, 중학교 집단은 31.4%, 고등학교 이상의 집단은 29.3%였다. 특히 고등학교 이상의 집단은 離婚전에는 子녀養育上에 어려움이 없었다가 離婚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20.7%로 타연령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이 집단이 離婚전후를 통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판단된다. 父의 解婚事由別로 子녀양육상의 어려움이 離婚전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면, 離婚전후 變함없이 養育問題인 경우는 40.7%인 別居, 家出 및 기타인 집단이 死別이나 離婚集團보다 상대적으로 많았고, 離婚전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가 離婚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24.2%인 이혼집단이 가장 많아 離婚集團이 解婚前後에 가장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편부가정의 어려움에 대한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職場과 子녀養育 並行的 어려움에 대한 事例)

“9년전 편부가정이 되었을 때 아이가 2세, 6세였다. 아이들이 너무 어렸고,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형집에 살고 있는 모친에게 아이들을 맡겼다. ...자녀양육 때문에 형제간에 갈등이 생기고 직장에서도 잔업이나 2교대를 여러 차례 거절하면서 직장을 그만 둘 수밖에 없었다. 배움이 부족하고 기술도 없어 직장근무 대신 택한 것이 일용노동이었다. 아침 6시에 집을 나가 저녁 7시면 귀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용노동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입도 일정치 않으므로 일대신 아이들 중심의 생활을 선택하면서 생활이 궁핍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신수자, 1995:109~110).

(子녀養育의 어려움에 대한 事例)

“12년전 편부가정이 되어 자녀가 5세, 3세 때부터 기르고 있는 고등학교, 중학교에 재학중인 딸, 아들이 있다. 남자의 경우는 아이들 일로 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애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때요? 라고 누군가에게 묻지 않으면 안되는데, 모자가정의 경우는 여자들끼리 이웃 아주머니들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남자의 경우 그런 대화가 없으므로 아이들 일로 전전공공할 따름이다. 현재 자녀양육문제로 재혼을 생각하고 있고, 편부가정을 위한 대책과 복지관

에 대한 지원 내용으로 자녀성격상담 및 자녀교육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신수자, 1995:110).

3. 家事問題

편부가정의 집안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해혼전후에 어떠한 변화를 겪은 지를 알아본 바는 <表 5>와 같다. 집안일 담당자가 解婚前에는 配偶者였다가 解婚後 本人으로 변화한 경우가 36.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해혼전 배우자였다가 해혼후 부모로 변화한 경우로 16.2%, 해혼전후에 변함없이 본인인 경우가 12.8%, 解婚前 配偶者였다가 解婚後 子女나 兄弟·姉妹 등으로 변화한 경우가 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해혼전에 배우자가 집안일을 담당했다가 해혼후 본인,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변화한 경우가 약 63.7%로 주로 해혼으로 인한 配偶者의 不在로 인한 경우였다.

이를 父의 年齡集團別로 나누어 보면, 해혼전에 집안일을 배우자가 담당하다가 해혼후 본인으로 변화한 경우는 나이가 많을수록 그 比率이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 50세 이상의 집단은 54.2%, 40세에서 49세까지의 집단은 33.7%, 39세 이하의 집단은 24.4%였다. 그리고 解婚前에 配偶者가 집안일을 담당하다가 解婚後 本人, 父母, 子女, 兄弟·姉妹 등으로 변화한 경우를 보면, 역시 나이가 많을수록 그 비율이 증가해 50세 이상의 집단은 81.3%, 40세에서 49세까지의 집단은 63.9%, 39세 이하의 집단은 44.4%였다. 이처럼 나이가 많을수록 해혼후 본인이 집안일을 담당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配偶者의 不在로 인해 본인이나 부모 및 형제·자매, 기타 친족 등이 집안일을 담당해야 하나 나이가 많을수록 偏父家庭 父의 父母가 사망하거나 노쇠하여 자신들의 일신도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집안일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父의 敎育程度別로 보면, 집안일을 해혼전에 배우자가 담당하다가 해혼후 본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변화한 경우는 학력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국민학교 이하의 집단은 40.3%,

〈表 5〉 偏父家庭 父의 一般特性 및 解婚事由別 解婚前後 집안일 擔當者 變化

(단위: %)

	해혼전 본인	해혼전 배우자 해혼후 본인	해혼전 배우자 해혼후 부모	해혼전 배우자 해혼후 기타 ²⁾	기타 ³⁾	계 (수)	χ^2
전 체 ¹⁾	12.8	36.9	16.2	10.6	23.5	100.0 (179)	
부의 연령**							32.28
39세 이하	15.6	24.4	15.6	4.4	40.0	100.0 (45)	
40~49세	15.1	33.7	22.1	8.1	21.0	100.0 (86)	
50세 이상	6.3	54.2	6.3	20.8	12.4	100.0 (48)	
부의 교육정도							12.48
국민학교 이하	14.9	40.3	19.4	7.5	17.9	100.0 (67)	
중학교	7.7	36.5	9.6	15.4	30.8	100.0 (52)	
고등학교 이상	15.0	33.3	18.3	10.0	23.4	100.0 (60)	
부의 해혼사유*							22.69
사별	5.6	42.6	11.1	22.2	18.5	100.0 (54)	
이혼	15.6	39.1	18.8	6.3	20.2	100.0 (64)	
별거/가출/기타	16.4	29.5	18.0	4.9	31.2	100.0 (61)	

註: 1) 무응답한 7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2) 기타에는 자녀, 형제·자매 등이 포함되었음.
 3) 기타에는 해혼전 본인 해혼후 기타, 해혼전 부부공동 해혼후 본인 또는 기타, 해혼전 기타(자녀, 부모 등) 해혼후 본인 등이 포함되었음.
 * p< 0.1 ** p< 0.01

중학교 집단은 36.5%, 고등학교 이상의 집단은 33.3%였다. 또한 해혼전에 집안일을 配偶者가 담당하다가 해혼후에 父母로 변화한 경우는 19.4%인 국민학교 이하의 집단이, 해혼전 집안일을 배우자가 담당하다가 해혼후 자녀나 형제·자매로 변화한 경우는 15.4%인 중학교 집단이 각각 타교육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父의 解婚事由別로 나누어 보면, 해혼전 배우자가 집안일을 擔當하다가 해혼후 본인으로 변화한 경우는 死別集團이 42.6%로 離婚集團의 39.1%나 별거, 가출, 기타 등의 집단의 29.5%보다 상대적으로 많았고, 특히 해혼전 配偶者가 집안일을 담당하다가 해혼후 子女나 兄弟·姉妹로

변화한 경우는 22.2%로 타집단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解婚後 가장 어려웠던 問題

정상가정에서 해혼함에 따라 偏父家庭이 변화된 생활환경에 따라 어려움을 겪었던 것 중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없는 상황속에서 子女養育이 가장 어려웠던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5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1.8%인 가사일 문제, 14.5%인 經濟的 問題, 5.6%인 健康問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편부가정이 생활상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는 배우자의 부재로 인한 子女養育問題와 가사일 문제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파생된 경제적 문제 또한 偏父家庭의 어려운 문제점인 것으로 나타나 偏父家庭의 父가 자녀 양육과 가사일, 집밖에서의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을 동시에 떠맡아야 하는데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偏父家庭의 父가 경제활동을 편안히 할 수 있도록 하는 支援策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表 6 참조).

이러한 편부가정의 해혼후 생활상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들을 父의 年齡集團別로 나누어 살펴보면, 연령집단에 관계없이 모두가 자녀양육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응답하고 있으므로 偏父家庭의 子女養育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40세에서 49세까지의 집단은 60.0%가 자녀양육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어 타연령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비율이 많았는데, 이는 이 연령층의 경우 자녀들이 思春期의 靑少年들인 경우가 타연령집단보다 많지만 사회의 여러 조직속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므로 세심한 관심을 가질 수 없다는 점과 더불어 여자아이를 둔 경우에는 남자인 父가 여자인 자녀를 돌보는데 限界를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50세 이상의 집단은 34.0%가

<表 6> 偏父家庭 父의 一般特性別 解婚以後 가장 어려웠던 問題 (단위: %)

	문제 없었음	경제적 문제	자녀 양육 문제	건강 문제	가사일 문제	기타	계 (수)	χ^2
전 체 ¹⁾	3.9	14.5	52.5	5.6	21.8	1.7	100.0 (179)	
부의 연령*								19.12
39세 이하	6.8	22.7	56.8	6.8	6.9	-	100.0 (44)	
40~49세	2.4	8.2	60.0	4.7	22.4	2.3	100.0 (85)	
50세 이상	4.0	18.0	36.0	6.0	34.0	2.0	100.0 (50)	
부의 교육정도								7.83
국민학교 이하	5.8	15.9	49.3	5.8	20.3	2.9	100.0 (69)	
중학교	1.9	11.8	47.1	5.9	31.4	1.9	100.0 (51)	
고등학교 이상	3.4	15.3	61.0	5.1	15.2	-	100.0 (59)	

註: 1) 무응답한 7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 p< 0.05

가사일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여 他年齡集團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이는 이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이 타연령집단보다 상대적으로 傳統的인 家父長的 制度속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가사일은 여성들이 하는 것으로 치부하여 가사일에 대한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經濟的 問題로 인하여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집단은 22.7%인 39세 이하의 집단이었다.

父의 教育程度別로 나누어 살펴보면, 61.0%인 고등학교 이상의 집단이 타교육집단보다 상대적으로 子女養育問題로 인하여 가장 고통을 받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가사일 문제로 인하여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는 31.4%인 중학교 집단이었으며, 經濟的 問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는 15.9%인 국민학교 이하의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5. 再婚에 대한 認識 및 態度

가. 再婚에 대한 認識

편부가정 父의 再婚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바는 <表 7>과 같다.

〈表 7〉 偏父家庭 父의 一般特性別 再婚에 관한 意見

(단위: %)

	재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재혼하는 것이 좋다	계 (수)	χ^2
전 체 ¹⁾	38.1	61.9	100.0 (118)	
부의 연령*				5.15
39세 이하	28.1	71.9	100.0 (32)	
40~49세	35.1	64.9	100.0 (57)	
50세 이상	55.2	44.8	100.0 (29)	
부의 교육정도				2.92
국민학교 이하	44.7	55.3	100.0 (47)	
중학교	41.2	58.8	100.0 (34)	
고등학교 이상	27.0	73.0	100.0 (37)	

註: 1) 무응답한 68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 $p < 0.1$

편부가정의 父는 재혼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경우가 61.9%로 재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38.1%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父의 年齡別로 나누어 살펴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재혼을 하는 것이 좋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최근에 올수록 戀愛結婚이 많아지고, 쉽게 헤어지는 것처럼 재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39세 이하의 집단은 再婚하는 것이 좋다는 비율이 71.9%로 64.9%인 40세에서 49세까지의 집단과 44.8%인 50세 이상의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父의 教育程度別로 나누어 재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재혼을 하는 것이 좋다는 比率이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 학력이 높을수록 서양의 문물을 접할 기회가 많고, 의식도 자연히 西洋의 文化에 영향을 보다 많이 받게 됨으로써 이러한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고등학교 이상의 집단은 再婚을 하는 것이 좋다는 비율이 73.0%로 58.8%인 중학교 집단과 55.3%인 국민학교 이하의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本人再婚 意思

편부가정 父의 本人再婚에 대한 意思는 재혼할 생각이 있다는 비율이 44.8%로 나타나 재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경우보다는 약 17.1%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나 認識과 실제 意思와는 差異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父의 年齡別로 나누어 살펴보면, 편부가정 父의 本人再婚에 대한 의사는 나이가 어릴수록 재혼할 생각이 있다는 비율이 많아 재혼에 대한 인식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또한 父의 教育정도 別로 보면, 재혼에 대한 인식처럼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본인재혼에 대한 의사에서 재혼할 생각이 있다는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현, 1997:84~85).

다. 再婚意思가 있으면서도 再婚안한 理由

偏父家庭의 父가 재혼할 의사가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재혼을 하지 않은 이유는 적당한 대상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比率이 63.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0.3%인 子女問題, 5.4%인 健康상의 이유, 1.4%인 家族의 反對 등의 순이었다.

이를 父의 年齡別로 나누어 살펴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再婚할 意思가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재혼하지 않은 이유로 적당한 대상이 없어서인 경우가 많아 50세 이상의 집단은 75.0%, 40세에서 49세까지의 집단은 66.7%, 39세 이하의 집단은 55.6% 등이었다. 이러한 적당한 대상이 없어서라는 이유를 제외한 가족의 반대, 子女問題,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재혼할 의사가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재혼안한 경우는 39세 이하의 집단이 각각 3.7%, 22.2%, 11.1% 등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父의 教育程度別로 보면, 적당한 대상이 없어서 재혼할 의사가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재혼하지 않은 경우는 81.8%인 중학교 집단이 가장 많았고, 子女問題나 健康上的의 理由로 인하여 재혼할 의사가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재혼하지 않은 경우는 각각 26.7%와 10.0%인 고

등학교 이상의 집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현, 1997:87~88).

이상에서 살펴본 편부가정 父의 再婚意思가 있으면서도 재혼안한 이유에 대한 事例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재혼상담소를 찾아가서 선을 본 경험이 있다. 재혼할 의사가 분명히 있으며, 재혼 상대는 미래를 생각하고 현재 함께 고생할 수 있는 활동성이 있는 사업적 파트너를 만나 편히 재혼 후에 잘 살고 싶다. 그러나 이혼한 여성들은 미래를 보지않고 집이 있는가, 얼마를 가져다 줄 수 있는가 하는 현재의 경제적인 부분만을 중시한다. 그리고 자기 자식은 중히 여기면서 내 자식 이야기는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재혼할 남자의 자식은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식만 강조한다. 자식이 있는 이혼남들을 거부한다. 그래서 재혼은 까다롭다고 생각한다”(변화순, 1996:93~94).

IV. 政策方案

1. 現行 政府支援施策의 改善

가. 國庫補助支援의 改善

편부가정의 월평균 생활비는 58만 8천원으로 3人 家口 最低生計費 60만 7천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특히 부의 교육수준이 국민학교 이하인 집단의 경우에는 月平均收入이 54만 9천원으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현행 정부에서는 생활등급이 7등급 이하인 居宅保護 偏父家庭에 대해서는 1인당 월평균 106,541원을 지원하고 있다(이상현, 1997:96~98). 하지만 이러한 지원금을 받더라도 우리나라 농가나 도시근로자의 月平均所得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最低生計費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이러한 지원금을 증액해야 할 것이다.

나. 職業訓練 및 就業斡旋

편부가정의 부의 직업이 單純勞務職이나 無職인 경우가 55.9%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편부가정의 父 중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勤勞促進프로그램(WIN: Work Incentive Program)(박태룡, 1993:10~13)과 같은 직업훈련프로그램을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노동부와 연계하여 반드시 등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노동부산하의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실시중인 전국적인 求人·求職登錄制를 통하여 취업을 알선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읍·면·동의 社會福祉 專門要員과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는 편부가정에 대해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다. 教育費支援의 改善

현행 정부에서는 偏父家庭에 대해 중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료(입학금 포함)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擴大하여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改善되어야 한다(보건복지부, 1997:6~9).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간 경우에는 登錄金を 長期 融資形式으로 대부해 줘 이들이 대학을 무사히 마치도록 유도하고, 대학 졸업후 취업을 하여 融資를 갚아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偏父家庭 家事 및 子女養育에 대한 對策

편부가정은 가사일과 子女養育을 편부가정 부가 담당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행 정부에서 家事 및 子女情緒 支援을 정기적으로 하고, 자원봉사자(대학생과 여성단체회원)와 편부가정 자녀를 결연시키며, 각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한 子女學習 및 放課後 生活支援 案內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

부의 가사 및 자녀정서지원은 미국처럼 유자격 專門서비스인 가정부서비스(Homemaker Service)가 아니라 무자격의 단순한 생활조력 수준에 머물고 있다(박태룡, 1993:10~13).

따라서 현재 老人, 障礙人, 要保護兒童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가정도우미와는 달리 미국의 경우처럼 가정부서비스(Homemaker Service)인 유자격 전문서비스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정부에서 여성실직자들을 대상으로 1999년부터 가정도우미를 선발할 예정이므로, 이들 가정도우미들에 대해 일정한 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가정도우미에 대해서는 地域社會의 사회복지관이나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일정기간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하고, 이들 가정부에 대한 훈련이나 선정기준, 임금, 작업시간 등은 市·郡·區의 가정복지과에 의해서 정하고, 財政은 미국처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한다. 그리고 읍·면·동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나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의 偏父家庭 現況을 파악하고, 가정부서비스를 할 가정부와 連繫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偏父家庭의 子女養育問題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가정부서비스가 최상의 대책이 될 수 있으나, 편부가정 전체에 대하여 가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여건을 고려한 次善의 對策을 제시하면 저소득 편부가정에 대해 일본과 여러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兒童養育手當¹⁾을 도입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佐藤 登史夫, 1992:117). 이러한 재

1) 일본에서 아동수당제도는 1971년 5월 아동수당법이 제정되고, 1972년 1월부터 실시되었다. 1995년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는 248만 4천명이었고, 지급액은 1942억 2800만엔이었다. 아동 1인당 수당액은 제1자가 월 5천엔, 제2자가 월 5천엔, 제3자부터 월 1만엔이었다.

스웨덴의 경우 아동수당은 16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며, 약 100만 가정의 160만명의 아동들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 아동수당은 가정의 자녀수에 비례하여 차등지급되는데 3자는 수당의 50%를, 4자는 100%, 5자부터는 150%를 추가지급받는다.

偏父家庭의 實態와 支援方案

정지원을 편부가정에 지원함으로써 子女養育에 정부지원금을 활용하는 대책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편부가정의 父가 안심하고 職場生活을 할 수 있도록 취학전 아동들의 경우는 어린이집에 우선 入所시키도록 하고, 就學兒童들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나 사회복지관의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도록 한다. 이 경우 低所得 偏父家庭은 정부지원 아동양육수당으로 所要經費를 충당토록 하고, 그 외 편부가정은 자신들이 소요경비를 지출토록 한다. 偏父家庭의 兒童들을 어린이집이나 방과후 프로그램에 입소 또는 참여시키지 않을 경우 이들 아동들은 保護者의 不在로 인하여 탈선이나 비행의 저지를 우려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책은 사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偏父家庭의 經濟的인 側面을 고려함과 동시에 이들 아동들의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편부가정 父가 직장일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편부가정의 자녀들은 24시간제 運營 어린이집을 양성하여 입소시켜 양육토록 해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政府保護 偏父家庭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일반 편부가정에 대해서는 실비를 부담하게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들 편부가정의 자녀들이 社會化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부재에 따른 情緒的 缺陷과 性에 따른 役割을 습득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사별의 경우 지역사회 내에서 우선적으로 어머니를 대신할 수 있는 結連자를 連繫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남보사연’(남에게 보탬되는 사람들 연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양부모(Foster Home) 운동’을 보다 活性化하여 전국적으로 擴散시킬 필요가 있다(중앙일보, 1997년 11월 8일자 참조). 또 다른 방안은 再婚을 통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이혼, 별거, 가출 등의 경우는 兒童福祉法에 아동의 부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삽입함으로써 헤어진 부모들 사이의 관계를 떠나 아동 자신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차원에서 아동이 원하면 언제든지 자신의 生母를 만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아동 자신들이 生母 만나기를 꺼려할 경우에는 예외로 생모를 만나지 않아도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離婚, 別居, 家出 등의 경우도 아동들의 양해하에 재혼을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아동들이 원하면 生母를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편부가정의 아버지들이 자녀양육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偏父家庭 아버지의 모임을 만들어 서로 같은 입장에서 서로 의논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그들만이 가지고 있던 問題點과 對應策을 동시에 발견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관이나 가정상담소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읍·면·동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나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이 문제점을 가진 편부가정과 사회복지관이나 가정상담소 및 專門家들과 連繫시켜 주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再婚에 대한 方案

再婚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偏父家庭의 問題點을 해소하는 방안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편부가정 父에 대하여 가족생활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結婚의 失敗者”라고 좋지 않게 보는 社會的 認識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재혼에 대하여 좋지 않게 보는 인식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再婚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재혼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들을 서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가정상담소에 대상인력에 대한 情報를 전산화하고, 대상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弘報活動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혼으로 인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재혼 이전에 가정생활과 再婚家庭의 가족성원들간에 화합할 수 있도록 가족성원 전원에 대한 교육과 서로간에 理解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회복지관이나 가정상담소에서 개발하여 반드시 참여토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再婚家庭이 또다시 破탄에 빠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V. 要約 및 結論

本 研究의 主要 分析結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편부가정 부의 평균연령은 45.4세였으며, 학력수준은 우리나라 남자의 학력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父의 職業은 단순노무직이 36.0%로 가장 많았고, 무직의 경우도 19.9%였고, 偏父家庭의 世帶別 家族形態는 72.6%가 2세대 가구였다. 편부가정은 47.8%가 자기집을 소유하였는데, 이는 1995년도 우리나라 국민의 自家所有率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둘째, 偏父家庭의 月平均 生活費는 58만 8천원으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월평균 생활비가 30만원 이하인 극빈층도 29.7%였다. 또한 偏父家庭 가구의 월평균수입은 70만 9천원으로 이는 1995년도 우리나라 농가와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득의 약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셋째, 편부가정들은 離婚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35.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1.2%인 配偶者와의 死別, 23.1%인 가출이나 유기, 9.7%인 별거 등이었다. 배우자의 사별로 인하여 편부가정을 이룬 경우 81.0%가 病死였고, 交通事故 등의 사고가 6.9%였으며, 自殺한 경우는 3.4%였다. 이별, 별거 및 가출의 주요원인이 夫婦間의 性格差異인 경우가 36.6%였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원인으로서는 가족간의 불화(19.5%), 배우자의 부정이나 경제적 문제(11.4%) 등이었다.

넷째, 편부가정에서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生活費目은 24.7%인 식품비였으며, 그 다음이 24.2%인 학비와 과외비를 포함한 교육비, 22.6%인 주거비 등이었다. 이처럼 基本的 生計를 위해 필요한 食品費가 가장 부담스러울 정도로 편부가정의 생활이 열악하였다.

다섯 번째, 편부가정 父의 解婚前後 子女養育 主擔當者는 71.2%가 편부가정의 父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부가정의 과반수가 養育問題에 어

려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편부가정 父의 약 49.7%가 집안 일을 본인들이 직접 擔當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 번째, 解婚後 가장 어려운 문제로 子女養育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1.8%인 가사일 문제, 14.5%인 經濟的 問題, 5.6%인 건강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일곱 번째, 편부가정의 父는 再婚하는 것이 좋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61.9%였으며, 편부가정 부가 재혼할 의사가 있다는 비율이 44.8%로 나타났다. 편부가정의 부가 재혼할 의사가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再婚을 하지 않은 理由는 적당한 對象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63.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0.3%인 子女問題였다.

이러한 주요결과들에 대한 對應策을 앞에서 다양하게 제시하였으나, 우선적으로 실현가능한 方案을 먼저 제시하고, 장기적인 차원의 政策方案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實現可能性이 있는 방안으로는 첫째, 현행 정부지원시책에 대한 개선책으로 國庫補助支援을 현재 보다는 현실에 부합되게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最低生計費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고, 노동부의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과 편부가정 자녀의 교육비는 현행 實業系 高等學校까지로 되어있는 것을 인문계 고등학교까지로 확대하도록 제안함과 동시에 대학에 가는 경우에는 長期融資를 대부해 주는 것이다.

둘째, 偏父家庭 子女養育에 대해서는 편부가정 부가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취학전 아동들은 어린이집에 優先的으로 入所시키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나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도록 하고, 偏父子家庭의 父가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부자가정의 자녀들을 그 기간 동안 24시간제 운영 어린이집에 입소시켜 양육토록 하면서 이에 따른 所要豫算은 정부 보호대상인 偏父家庭은 정부에서 兒童養育手當을 지원하고, 그 외의 편부가정은 실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偏父家庭 父의 어려움

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들의 모임을 만들 것과 사회복지관이나 家庭相談所를 읍·면·동 社會福祉 專門要員이나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이 연계시키는 역할을 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였다.

장기적인 차원의 方案으로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生母를 통한 정상적인 社會化過程을 모색할 수 있도록 아동이 원하면 언제든지 생모를 만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제공하고, 偏父家庭의 家事 및 子女情緒 支援을 위해서 미국의 가정부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豫算을 확보하고, 가정부서비스 人力을 양성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再婚에 대한 방안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認識을 변화시키고, 재혼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情報電算化를 제시하고, 또다시 再婚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토록 가족성원 전원들에 대한 교육과 서로간에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회복지관이나 家庭相談所에서 개발하여 반드시 참여토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偏父家庭에 대한 對應策이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향후 이혼율의 증가로 인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偏父家庭이나 偏母家庭 및 要保護兒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성장하는 유아 및 청소년들이 가정을 이룰 때는 보다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으리라 예측된다. 물론 이러한 대응책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각 對應策에 대한 評價에 따른 보다 나은 改善策이 계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김응석·이상현, 『소년·소녀가장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_____, 『아동복지수용시설의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김정자 외, 『편부모가족의 지원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84.

- 박대룡, 「부자가정의 실태와 지원방안」, 『대구대법정논총』, 제8권, 1993.
- 박순일 외,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 보건복지부, 『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지침』, 1997.
- _____, 『전국부자가정 실태조사 보고서』, 1994.
- _____, 『'96 저소득 부자가정 실태조사 보고서 집계표』, 1996.
- _____, 『'96 생활보호대상자현황분석』, 1996.
- 변화순 외, 『한국 가족정책에 관한 연구-여성·아동복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1990.
- _____, 『이혼가족을 위한 대책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6.
- 신건희, 「부자가정의 의미와 문제점 및 대응책」, 『사회과학논문집』, 제14권, 대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5.
- 신수자, 「부자가정의 특성과 대책」,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석사논문, 1995.
- 이상현, 「부자가정의 발생원인과 문제점에 따른 정책방안」,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논문, 1997.
- 이효재, 『가족과 사회』 경문사, 1983.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6.
- 한국복지재단, 『사회복지관 사례연구-제11집-』, 1995.
- 佐藤 登史夫, 「單親家庭-その實態と福祉の開開」, 長山奇縣立女子 短期大學, 『研究紀要』, 第40號, 1992.
- 平野隆之外, 『父子家庭』, 京都: ミネルウア書房, 1987.
- Anne H. Gauthier, *The State and the Family-A Comparative Analysis of Family Policies in Industrialized Countries*, Clarendon Press, Oxford, 1996,
- Grief G. L., 『Single Father』 Lexington, Mass., Lexington Book, 1985.
- Jan Trost, "The Concept of One-Parent Family",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11, No.1, 1980.
- Lynn D. B., *The Father: His Role in Child Development*, Monterey, Calif., Books Cole, 1974.

Summary

Problem Issues of Single-parent Male-headed Families and Its Policy Measures

Sang Hun Lee

There has recently been a rise in the number of single-parent male-headed families with the increase in divorces, industrial accidents and traffic accidents, etc. in Korean society. In the near future, the number of single-parent male-headed families will continuously increase along with the improvement of women's status and the increasing divorce rate. This trend will result in a social problem that will affect both single-parent male-headed families and social institutions themselves. The main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first to identify the current state of single-parent male-headed families and then to suggest policy measure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ean age of fathers in single-parent male-headed families is 45.4. More than 67% of these fathers have less than a middle school education, which is lower than the average educational level of men in Korea. Second, the main causes of single-parent male-headed families are divorce, 35.5%, death of spouse, 31.2%, runaway or abandonment, 23.1%, and separation, 9.7%. Third, the average monthly living cost of single-parent male-headed families is around 588 thousand won at 1994 constant prices, which is lower than the minimum cost of living. The monthly income of single-parent male-headed families is 709 thousand won, which was 40% less than that of farmers and urban workers in 1995. Fourth, the largest burdens of expense that single-parent male-headed families spend on living are for foodstuffs(24.7%), education of children(24.2%), and housing(22.6%). Fifth, among single-parent male-headed families in this study, 53.1% of fathers took sole charge of raising the children after marriage dissolution. Sixth, among single-parent male-headed families in this

study, 36.9% of fathers responded that they themselves manage household chores after marriage dissolution, while 16.2% responded that their parents do. Seventh, 61.9% of fathers in single-parent male-headed families were positive towards remarriage and 44.8% hoped to remarry.

The following policy measures are recommended for the solving of problems related to single-parent male-headed families derived in this data analysis. First, child allowance should be introduced to support the present public assistance program. In addition, the homemaker service program in the U.S.A. should be introduced to support household chores and care for children in single-parent male-headed families. Second, educational aid for single-parent male-headed families should be extended to all high school youngsters. In addition, a long-term loan will be offered to university students in single-parent male-headed families. Third, the government should emphasize educational services for the children of single-parent male-headed families. There should also be prioritization for pre-school children and youngsters of single-parent male-headed families to enter children's homes and after school programs in welfare facilities, which will decrease the psychological burden on fathers at work. For normal socialization and to meet the child's rights, the child welfare law should be revised for meeting of the child with the real mother. Fourth, information on remarriage should be computerized to support remarriage of father's in single-parents male-headed families. Welfare facilities and family counselling offices should develop various programs to help remarried couples and family members understand each other's standpoints and there should be inducement to join these programs.